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9

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남인순·김원이·김용민

백승아 · 장종태 · 전진숙

윤준병 • 박지원 • 민홍철

김남희 • 백혜련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"출산크레딧"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,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시점과 혜택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등에 대해서도 출산크레딧을 인정해주고 있어, 단순히 출산행위에 대한 보 상이기 보다는 아동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

지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추가 가입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며, 정부가 이러한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. 또한 제도의 명칭을 출산·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이루고자 함(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 제목 중 "출산"을 "출산·양육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"을 "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(「민법」에 따라 친생자·혼인외 출생자로 인지되거나, 양자·친양자로 입양된 때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자녀가 입양된 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는"으로 하며,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2명"을 "1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3명"을 "2명"으로, "둘째"를 "첫째"로, "2자녀"를 "1자녀"로, "18개월"을 "12개월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전부 또는 일부"를 "전부"로 한다.

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출산·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
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19조(<u>출산</u>에 대한 가입기간 추 제19조(<u>출산·양육</u>에 대한 가입기 가 산입) ① 2 이상의 자녀가 간 추가 산입) ① 가입자 또는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 한 때(「민법」에 따라 친생자・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혼인외 출생자로 인지되거나,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 양자·친양자로 입양된 때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자녀가 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)에는 다음 각 호에 따 입양된 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조에서 같다)에는-----산입한다. <후단 신설> 다만,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 -----. 이 경우 자녀 수 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자녀 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다. <단서 삭제> 한다. 1. -----<u>1명</u>-----1. 자녀가 2명인 경우 : 12개월 2. 자녀가 <u>3명</u> 이상인 경우 : 2. -----<u>2명</u>-----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첫째----------<u>1</u>자녀-----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-----12개월-----개월 수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(3) ----

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	
원은 국가가 <u>전부 또는 일부</u> 를	<u>전부</u>
부담한다.	